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78 발의연월일: 2025. 2. 12.

발 의 자:이재정·박홍배·김영환

백혜련 · 임호선 · 복기왕

박희승 · 김한규 · 정진욱

강훈식 · 강유정 · 박정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'학자금'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·교재구입비·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원룸을 임차하는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.

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,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 조제3호).

법률 제 호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호 중 "숙식비"를 "숙식비(기숙사비,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한 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		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"학자금"이란 고등교육기관	3		
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			
한 등록금과 <u>숙식비</u> ·교재구	<u>숙</u> 식비(기숙사		
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	비,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한		
등의 생활비를 말한다.	다)		
4. ~ 13. (생 략)	4. ~ 13. (현행과 같음)		